

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주문 연구 · 연구 관리	①연구개발 서비스	
	②판매처	
	③향후 계획	
연구 장비 · 연구 재료	④개발제품	
	⑤판매처	
	⑥향후 계획	

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 작성방법

1. ①의 “연구개발서비스” 란에는 전문연구사업자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주된 연구개발서비스의 내용을 상세히 작성합니다[예시: 비임상시험, 빅데이터 분석·처리, 기술 이전·거래 지원, 아이피(IP) 관리 등].
 2. ②의 “판매처” 란에는 전문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의 주요 판매처를 작성합니다.
 3. ③의 “향후 계획” 란에는 신규 연구개발서비스 개발, 사업 분야 확장, 연구개발(R&D)·시설 투자, 산학연(産學硏) 협력 등 전문연구사업자의 향후 계획을 작성합니다.
 4. ④의 “개발제품” 란에는 전문연구사업자가 현재 개발하여 납품한 연구장비 또는 연구재료의 개발 배경 및 경과, 용도·사양, 우수성,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(해당 제품을 자체 개발했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). 다만, 「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의 “연구장비 유지·보수업” 으로 신고하려는 연구사업자는 유지·보수 대상 연구장비의 종류, 유지·보수 범위 및 내용 등을 작성합니다.
 5. ⑤의 “판매처” 란에는 전문연구사업자가 개발한 제품(“연구장비 유지·보수업” 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지·보수 서비스를 말합니다)의 주요 판매처를 작성합니다.
 6. ⑥의 “향후 계획” 란에는 신제품 개발, 기존 제품 고도화, 연구개발(R&D)·시설 투자, 산학연 협력 등 전문연구사업자의 향후 계획을 작성합니다.
- ※ 두 가지 업종을 신고[예시: 공학 연구개발업(주문연구산업), 광학·전자영상장비 개발업(연구장비산업)]하는 경우에는 신고업종별로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작성합니다.
- ※ 작성 매수의 제한은 없으며,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.